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진교훈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1 FAX 041-968-2989

권 두 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가 수사체제 재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황운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요인 비교연구

백석대학교 교수
임형진

연구특집

고소·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기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경찰의 대응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류연수

해외경찰탐방

미국의 외국인 범죄 정책에 관한 소고

시카고총영사관 총경
이준형

세미나 증계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권오국

연구소 소식

주요 행사 및 신입연구관 소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가 수사체제 재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황운하

변화의 시대

긴 호흡으로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회의 체제가 바뀌는 변곡점이 있다. 변곡점에 다다를 무렵에는 전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舊체제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풀어서 갖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엔트로피가 커진 상황에 놓인 사회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변화의 요구가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검찰제도가 바로 그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는 듯 하다. 우리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엘리트 집단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독점한 권한을 권력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면서 불공정한 권한의 행사와 내부비리로 쫓아가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화약고 터지듯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형사사법 질서의 수립

이제 우리의 검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개혁의 요구는 강력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바꾸

어야 지금까지의 검찰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현재의 검찰제도가 갖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소권을 가진 자가 행하는 수사는 그 자체로서 무서운 권력이 된다. 기소권자가 행하는 수사는 객관성을 잃기 십상이고 언제든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政敵에게 수사라는 메스를 들이대고 기소하여 법정에서 세우게 되면 오랜 법정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상자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가 된다.

그렇다면 해법도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에 전종하는 것이다. 수사·기소 업무를 상이한 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직접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주의의 의미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독립된 법관의 판단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

으므로 경찰이 법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수사를 하면 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 수사 업무와 기소 업무는 긴밀히 연결되어야 범죄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더라도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의무가 원칙으로서 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공수처 모델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형태로서 이는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지만, 정치적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검찰개혁의 과도기를 거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국가 수사체제는 경찰이 본래의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이 되며, 공수처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태가 된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변화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없애고 하여 그 수사권이 경찰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인 권한으로 보자면 경찰은 현재와 같은 수사개시·진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그 부분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의 힘이 빠지고 경찰이 그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경찰이 행하는 수사가 검찰의 그것

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사권한의 증감과 별개로 경찰에 대한 개혁과 경찰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경찰 개혁의 큰 방향은 자치경찰제 확대와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경찰청 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찰청은 현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공감하면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사영역에서의 경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전문성 제고,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며

이제 변화는 곧 다가올 현실이 되었다.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 변화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은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 우리 경찰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국민들에게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와 그 해법을 잘 설명하고 변화되는 국가의 수사 체제 안에서 경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끝으로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자서전을 마무리하며 남긴 말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PSI**

한국과 미국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 비교

백석대학교 교수 임형진



들어가며

경찰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민은 단순히 경찰이 무엇을 하였는가(예를 들어, 범죄자를 더 많이 체포하고 범죄율을 낮추었는가)하는 업무수행의 결과론적 요소보다, 경찰이 그들의 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는가(예를 들어,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는가)하는 업무수행의 절차론적 요소에 의하여 더 많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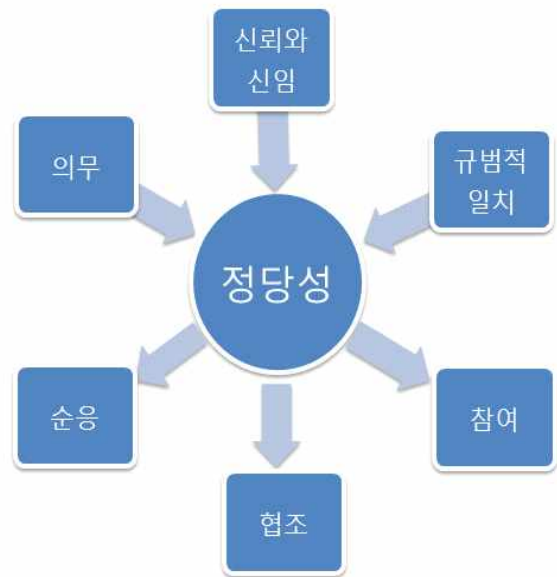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들이 왜 법집행기관의 지시에 따르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인 규범적 관점(법집행기관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법집행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및 제도적 관점(법집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치러야할 대가를 피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지시에 따른다)과 연관된다. 위 두 견해는 상호보완적이며,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권력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할 때에 더욱 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 절차론적 요소를 중시하면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이 결과를 미국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초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는 <그림 1>과 같은 모형으로 정리된다.



<그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Tyler와 Jacken(2014)은 위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 국민 중 1,603명의 대표성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순응, 협조,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요인의 비교를 위해 활용되었다.

경찰활동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한국 국민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비교대상인 Tyler와 Jacken(2014)이 사용한

유럽사회설문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순응’, ‘협력’, ‘지역사회 참여’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정당성’, ‘경찰에 대한 평가’, ‘개인적 경험에 대한 평가’, ‘잠재적으로 정당성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1: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 준법행위(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경찰의 정당성의 각 구성요소들이 각 기대행동(준법행동, 협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며, 이는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경찰의 정책 및 관행에서의 절차적 정의, 정당성, 그리고 법치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시민들의 경찰과의 접촉경험은 일반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요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① <가설 1>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찰 정당성이 시민 준법행위(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정당성이 시민의 준법행위(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달랐다.

② <가설 2>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찰 정당성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일반적 정당성이 사법권력에 대한 협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달랐다.

③ <가설 3>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 결과는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비슷했다.

④ <가설 4>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찰 정당성의 각 구성요소들이 정당성의 각 기대수준(준법행동, 협조, 참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정당성의 많은 구성요소들이 정당성의 각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달랐다.

⑤ <가설 5>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절차적 정의에 관한 요소(예: 의사결정 공평성, 처우의 질, 정확성)들 중 많은 부분이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 결과는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비슷했다.

⑥ <가설 6>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경찰과의 접촉경험 관련 구성요소들 중 일부가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구체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연구내용(Tyler & Jackson, 2014)과 조금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미국의 연구내용과 비슷했다.

맺음말

본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일부 가설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가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경찰의 정당성이 국민들의 준법행위(순응도), 협조,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국은 이와 달리 경찰의 정당성이 국민들의 준법행위(순응도), 협조,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경찰의 절차적 정의 및 경찰접촉성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경찰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미 양국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자료분석의 기술적인 요인, 한미 양국 경찰의 권한 및 위상의 차이, 역사적인 경험, 문화적 차이, 비대한 한국 검찰 권력으로 인한 한국 경찰의 역할 축소 등이 한미 양국 연구결과에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무엇보다도 제도적 관점보다는 규범적 관점에 입각한 절차적 정의론에 기초하여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은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만약 시민들이 경찰과 접촉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의 정당성을 낮게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준법에 대한 의식도 저하될 것이고, 그러한 흐름은 경찰업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¹⁾ **PSI**

1) 이 글은 필자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용역과제 연구결과보고서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독자는 원 연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보내실곳

- e-mail : fivenation@police.go.kr
- 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오국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편집팀장 : 권오국 연구관
- 편집위원 : 이동국 행정관

고소·고발 입건 절차 개선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기현

들어가며

고 소·고발에서의 국민 인권보장 문제가 수사-기소 분리문제와 더불어 준비되고 있다.

먼저 고소인의 권리로서 고소제도들 들여다보면, 고소인의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구현을 위하여 고소는 중요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고소권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고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¹⁾ 또한 고소권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사민원상담관제와 같은 제도도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소사건은 2014년 기준 495,436건으로 인구 1만 명당 97.5건이며, 이는 이웃 일본의 같은 연도의 11,526건, 인구 1만 명당 0.91건과 비교할 때 100배가 넘는 고소·고발 율을 보여주고 있다.²⁾ 또한 우리의 경우, 전체 고소사건의 약 18.1%만이 기소되는 실정이다. 또한 고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사분쟁형 고소에서는 민사사건에 관계된 무고한 상대방도 고소만 있으면 입건되어 준범죄자 신분인 피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찰 실무상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을 요구할 때 소환의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환요구를 받은 피고소인은 방어권에 제약을 받으며, 불안한 상태에서 출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고

소인의 권리 못지않게 피고소인의 권리³⁾도 존중받아야 한다.

먼저, 국민이 고소를 당하여 강제로 피고소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하여 그 사건에 대한 정당한 답변과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다.⁴⁾ 국민이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고소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 이전 단계에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이에게 부당한 고소를 제약하는 방안은 고소인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과 등이 있을 수 있다. 고소 이후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선별입건하여 부당한 고소를 반려 또는 각하함으로써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여기서는 국민의 인권보장 방안 중 수사기관이 선별입건하여 피고소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인 선별입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하여, 현장 경찰관이 좀 더 자신있게 선별입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규정에 대한 해석

먼저 규정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⁵⁾ 그리고

1)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에 대하여 무려 17개 조문(제223조에서 제239조)을 두고 있다. 고소·고발 이외의 수사의 단서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은 변호사자의 검시(제222조, 1개조문)와 자수(제240조, 1개조문) 뿐이다.
2) <http://www.e-stat.go.jp/SG1/estat/GL02020101.do?method=listDisplay&statCode=00250003&tstatCode=000001012929&tclass1=&tclass2=&tclass3=&tclass4=&tclass5=> (2016.8.29. 접속) 고소 9,180건, 고발2,346건.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당하지 않을 권리,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 사유를 알고 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겠다.
4) 경찰청에서는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쉬워진다. (2017.5.23.,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5.29. 접속)
5)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는 ‘입건하여’ 수사 종결한 때에는 모두 송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입건’여부를 결정하고, ‘입건하여’ 수사한 경우에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입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건 여부의 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입건재량에 관한 학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경찰의 수사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재량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어떤 학자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보다 그 행사를 남용할 때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온다고 하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범죄인지권의 남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명백한 민사사안에 불과하여 형사입건할 가치가 없으면 수사개시권을 발동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형사사법의 운용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형사정책상의 목적으로 수사를 즉시 개시할 수도 있고 수사절차상 다소 늦출 수도 있으며,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입건유예도 가능하다고 한다.⁷⁾

다른 책에서는 경찰실무에서 ‘사실상의 훈방’ 혹은 소위 ‘경찰상의 입건유예’ 등이 적지 않게 활용되

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7) 조광훈,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1, 301-310쪽 참조

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인정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⁸⁾

또 다른 이론은, 검사에게 있어서 검찰 수사권 자체의 내재적 한계, 국익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는 독일 등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고찰 및 수사자원의 인적·물적인 한계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검사가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재량이 인정된다고 한다.⁹⁾ 그렇다면, 이 주장이 나온 이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수사개시권이 명시된 이상,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 개시에 관한 과거의 검사의 재량에 관한 논의와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¹⁰⁾

연관 판례 분석

판례는 수사기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재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결은 없다. 하지만 직무유기 관련 판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입건재량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판결¹¹⁾에서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범죄혐의에 관하여 검사에게 인지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할 따름이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은 전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

- 8) 정세중, “경찰내사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11, 2013, 103-110쪽
- 9) 최기식, “검사의 수사재량권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통향 제23호, 2009, 41쪽
- 10) 다만, 이러한 학설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있음을 밝혀둔다. 손동권(“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99쪽(신동운,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06, 2003, 47-48쪽에서 재인용))은 훈방권 자체를 경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문성도(“과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경찰대 논문집 제15집, 1995, 33쪽)는 훈방권이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질 권한이라기보다는 경찰서장에게 인정된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논의의 귀결이 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 11) 대법원 1982.6.8. 선고.82도117판결

법경찰관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하여 사법경찰관도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재량권이 있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한 판결을 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 판결¹²⁾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사의 개시 이전에 조사활동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한편 어떤 학자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고 하였으나,¹³⁾ 해당 판례들은 모두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관련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을 꾀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든지, 뇌물을 받은 경우이다. 역시 반대 해석을 하자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뇌물수수 없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¹⁴⁾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현행법 규정, 학설, 판례를 종합하여 살펴본 이상, 현행 법제 하에서 고소·고발장 선별입건제를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i)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을 때 입건여부¹⁵⁾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ii) 수사개시 이전에 범죄혐의 존재유무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¹⁶⁾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건 전까지는 수사

의 개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찰청의 고유한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⁷⁾

민원인의 부정확한 법률판단에 근거하여 작성된, 또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범죄혐의의 인식 또는 사료’가 없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¹⁸⁾

다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형사소송법 제238조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접수를 하는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반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더 나을 것으로 본다. 차후 형소법 개정논의에서 논의된다면 좋겠다. [PSI](#)

는 내사종결(혐의 입증에 어려울 경우)이나 입건(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인지)과 더불어 종료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를 내사-입건-수사-송치(종결)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내사는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라고 본다. 그리고 입건(인지)으로 수사의 개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인지는 대법원 2001.10.26.선고,2000도2968,판결에 따라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 또는 ②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즉, i) 강제수사를 위한 체포영장·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ii)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때, iii)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 iv) 긴급체포를 한 때, 그리고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v)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을 신청한 때]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 역시 (비록 범죄인지서의 작성이나 사건번호의 부여는 없더라도) 입건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12) 대법원 2006.12.7.선고.2004다14932판결
 13) 조광훈,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1, 306쪽
 14) 대법원 1982.6.8.선고.82도117판결
 15) 설이 다소 갈리지만, i) 죄가 되지 않는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는 재량과 ii) 죄가 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모두 있다고 본다.
 16) 실무에서 활용하는 ‘내사’와 동의어라고 본다. 내사

17) 따라서 입건 전(수사 개시 전)의 조사활동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내사처리규칙(경찰청 훈령)이 적용되는 경찰청의 고유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도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이다.
 18) 오상지, “내사의 개념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2, 118쪽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경찰의 대응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류연수

들어가는 말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핵심 의제로 채택된 후, 쏘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 인공지능(AI),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무인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기술혁신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치안환경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치안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것으로 예측된다.

다보스포럼에서 '25년에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하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10%가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되고, '30년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를 미리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드론,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입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하면 치안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준비도 순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치안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대응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연구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준비 수준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18세기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 혁명(제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생산혁명(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

기 후반의 컴퓨터 및 인터넷 혁명(제3차 산업혁명)의 뒤를 잇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특징되고 있다. 초연결성은 사물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사물 등 객체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극대화 됨을 의미하며, 초지능화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연계·융합하여 스마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18세기)	(19-20세기 초반)	(20세기 후반)	('15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한 대량 생산보급	인터넷과 스마트혁명으로 미국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시스템 혁신

'16년 다보스포럼에서 스위스 금융그룹인 유니언뱅크(UBS)사는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인프라(SOC)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상대 평가하였다. 국가별 준비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22위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술수준 23위, 교육시스템 19위를 기록하였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 법적 보호는 29위로 주요 국가들보다 많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시스템	SOC 수준	법적 보호	전체
스위스	1	4	1	2	3	1
싱가포르	2	1	9	1	4	2
네덜란드	17	3	8	5	9	3
핀란드	26	2	2	16	1	4
미국	4	6	4	10	18	6
일본	21	21	5	7	13	12
독일	28	17	6	6	14	14
말레이시아	19	36	20	28	22	22
한국	83	23	19	20	29	25
중국	37	68	31	34	30	28

*자료: USB('16,1)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치안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나노·바이오 기술 등이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팅 기술이 치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연구하였다.

2.1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포함하는 단거리 모바일 송수신기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도구나 물건에 내장 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은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센서, 유·무선통신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리포트앤리포트(ReportsnReports)의 자료에

따르면 '16년 160억 달러에서 '23년 1천9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트너(Gartner)는 '16년 사물인터넷 디바이스가 약 229억 개까지 증가하고, '20년에는 500억 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물인터넷은 경찰활동 중 센서, RFID와 능동형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 활동, 스마트위치 등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용한 순찰활동 강화, 폴리스캠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범죄증거 채증 및 범죄자 추적, 범죄데이터를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치안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뉴욕시의 DAS(Domain Awareness System)이 있다. DAS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뉴욕 시가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범죄 감시 시스템으로 '12년 8월 첫 시연되었다. 뉴욕시 경찰국(NYPD)이 관할하는 CCTV 3천개와 다리·터널·순찰차 등에 설치된 2천6백개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 911 신고 전화, 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해 범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용의자나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범죄 정보를 분석하며, 도시 전역의 실시간 영상을 통해 차량의 위치 파악,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추적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DAS와 유사한 지능형 CCTV통합관제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의 육안에 의존하고 있어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에 지능형 영상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위해 자동감시'와 '문제차량 자동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차량 자동감시 서비스'는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후, 연동되어 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체납)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위해 자동감시 서비스'는 학교주변 및 통학로, 공원 등 어린이 출연이 빈번한 구역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물인터넷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등 활용 분야가 많이 있고 도시안전을 위한 스마트 치안에도 활

용될 수 있다. 보안에 취약하여 외부로부터 해킹되어 도·감청과 개인정보 약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2.2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자료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범죄 예방, 재난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의 예측에 따르면 '20년 빅데이터 분석과 기술 시장은 현재 1301억 달러에서 20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치안분야에서는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이 주목 받고 있다. 과거 범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을 예측한다.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범죄유형 및 피해자 특성을 지리정보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간 및 공간에 따른 범죄다발지역(hot spot)을 중심으로 현장 치안 인력 배치와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경찰활동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지도(Crime Map)' 서비스가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애틀란타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는 지역별 범죄현황을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도시의 위험도를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와 애틀란타의 '범죄지도' 제공이 실질적인 범죄율 하락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시스템으로 지오프로스(GeoPros)가 있다. 지오프로스는 다양한 공간통계기법을 경찰의 각종 범죄수사데이터(형사사법시스템, 수법자료, 전과자료, 주민자료)에 적용하여 범죄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에서 2009년 4월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최종별 범죄 발생 위치와 시간, 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

이 담긴 경찰의 범죄 데이터와 전국을 37만여 개 구역으로 나눈 지도를 연계해 우범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보여 준다. 또한, 범죄위험지역 예측 기능을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IDS, Instant Dispatch System), 경찰 모바일 시스템(스마트폰)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순찰 루트 선정도 지원할 수 있다.

범죄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기관/조직별로 보유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간 데이터공유와 호환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은 허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법·정책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2.3 인공지능(AI)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하게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인간의 사고능력(학습, 추론, 인식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기술과 접목되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쏘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16년 80억 달러에서 '20년 47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은 치안분야에서는 CCTV, 로봇, 드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연계되어 범죄예방, 수사지원, 자살예방과 콜센터 업무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페이스북은 '17년 3월 1일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용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지인들의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자살위험을 식별하고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아울러 자살방지센터 등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살우려가 높은 이용자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상담전문가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17년 2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중대사기수사국(SFO, Serious Fraud Office)은 최근 롤스로이스의 대규모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레이븐(Ravn)'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으로 3천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검토하여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한다. '레이븐'은 하루에 60만 쪽의 문서를 처리하여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오류 없이 정확하게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인공지능을 치안활동에 활용하면 똑똑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안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코딩과 프로그래밍 결과로 언제든지 해킹 위험과 보안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 또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존 법 제도를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악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곤란하다. 치안 분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개발, 보안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연구를 확대하고 법·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2.4 드론

드론은 실내외에서 자율비행하면서 위험요소를 감지, 추적해 정보를 제공하는 비행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드론의 성능은 급속히 발전하여 고성능 드론은 HD 화질보다 4배 뛰어난 4K 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고 3000m 상공에서 시속 112km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17년 말까지 60억 달러에 달하며, '20년까지 최고 1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의하면 세계 엔티드론(Anti-Drone) 시장은 '17년 4억 달러에서 '22년 1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드론은 교통량 확인,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및 범죄현장 채증, 테러예방 등 치안 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찰용(소방, 방재, 군사용 등)으로도 사

용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실종자와 용의자 수색,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 화재 사고 등에서 드론을 띄워 이미지와 동영상 촬영한다. '17년 3월 20일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찰서장협의회(NPCC,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스티브 배리 부서장은 다른 경찰서들도 실종자와 용의자 수색, 교통사고 현장 대응 등에서 드론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드론은 비용측면에서 헬리콥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활용이 용이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드론을 시위 현장이나 범죄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14년 퍼거슨(Ferguson, Missouri)시 소요 사태 당시 미국 경찰은 시위대를 드론으로 촬영해 현장에서 법 위반자를 촬영하고 재판 증거자료로 활용하였다. '15년 4월 미국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는 경찰이 전기충격기(Taser Gun), 최루탄발사기 혹은 고무탄 총 등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한 경찰용 드론의 사용을 합법화시켰다. 단, 드론을 이용해 채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17년 1월 설 연휴 기간 동안 경찰청과 도로교통공사는 드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 벤처업체인 에어시티의 AT1000 기종으로 프로펠러가 8개 달린 옥토크터(Octocopter)형 드론으로 지상 25m 상공을 시속 80km로 약 2시간가량 비행하며 20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법규위반을 단속했다.

드론 활용은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 범죄 및 사이버 범죄 이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법·정책연구가 필요하다.

2.5 3D프린팅

3D프린팅은 분말, 액체, 고체(실, 와이어, 펠릿) 형태의 특정 물질을 한 층씩 쌓아올려 3차원 구조

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프린터에서 잉크를 사용한다면 3D프린터에서는 대개 플라스틱을 잉크로 사용한다. 미국 컨설팅기업 홀러스어소시에이츠(Wohlers Associates)에 따르면 세계 3D프린팅 시장은 '15년 51억 달러에서 '19년 15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1%씩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국내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D프린팅 시장은 '15년 2,230억 원에서 '19년 5,082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D프린팅을 경찰장구 및 장비 개발에 이용하면 제작비용과 시간을 절감 수 있고 복잡한 형상 제작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사에서 범죄와 사고현장을 3D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캐닝한 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재현하면 법정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13년 미국의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라는 비영리단체는 3D프린팅으로 인쇄하여 권총(Liberator)를 제작하였다. 총 16개의 부품 중에서 금속 소재인 1개 부품을 제외한 15개를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조립하였고, 실제 탄환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살상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권총 제조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단시일 내 1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다.

엔가젯(Engarget)에 따르면 '16년 7월 미국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3D프린팅한 지문을 수사에 활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판단했지만 스마트폰이 잠금으로 설정되어 수사에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기법을 두고 법률적으로 옳다는 쪽과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총기와 폭탄, 마약 등을 불법 제조하여 범죄에 손쉽게 악용하고 열쇠와 지문, 얼굴 등까지 무단 복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연구가 요구된다.

3. 경찰의 대응

현재 경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술 분야	과제명	기간/사업비	착수	주관기관
빅 데이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설립 기본구상	0.5년/ 0.5억 원	'16 (완료)	빅스터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및 구축	5년/ 107.9억 원	'15	도로교통공단
	빅 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3년/ 52억 원	'16	주베가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범죄-테러 신속대응 시스템 상세기획 연구	0.5년/ 0.24억 원	'16 (완료)	전자부품 연구원
	다중로그 기반 멀티 모달 데이터융합 분석 및 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4년/ 67억 원	'17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드론	경찰드론 운용규칙(안) 연구	0.5년/ 0.3억 원	'17	선정예정
	실종자 수색전용 무인기 및 영상 분석기술 개발	1.5년/ 8억 원	'17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운용	3년/ 490억 원	'17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및 감시 기술 개발	5년/ 437억 원	'17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과 ‘빅데이터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과제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 신호운영체계 개발’ 과제는 다양한 교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과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상의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사와 범죄 예측에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설립관련 정책 연구는 '16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다중로그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융합 분석 및 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대인, 대물 및 장소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위험 용의자, 교통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테러 신속대응 시스템 상세기획’ 정책 연구는 ‘16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드론 분야에서 3개의 과제가 ‘17년부터 착수 예정이다. ‘실종자 수색전용 무인기 및 영상 분석기술(S/W) 개발’ 과제는 장시간 비행, 넓은 운용반경 및 고해상도 주·야간 카메라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에 적합한 기체 개발과 주·야간 카메라에서 획득한 사람형상(영상정보), 체온(열 정보)등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실종자를 찾는 기술을 개발한다.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영’ 과제에서는 그물총(Net gun), 소향전파교란 장치(Jammer) 등 경찰에 특화된 탑재장비와 용의자 추적, 불법드론 제압, 항공영상 지원 등 특화기술을 개발한다.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및 감시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레이더, 주·야간 카메라 등 다중센서 기반 식별장치와 획득 정보를 상황실 및 치안용 드론에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17년에 ‘경찰드론 운용규칙(안)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저 중산층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는 치안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 치안수요 증가에 스마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과 법·정책연구를 통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SI**



맺으며

‘16년 다보스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쏠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치안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응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별 치안 활용 분야, 국내외 적용 사례 및 치안 R&D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향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치안 활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기반기술별 치안활동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으로 치안활동에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면 치안역량강화와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불안요인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많은 직업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기술/고임금’과 ‘낮은 기술/낮은 임금’간의 격차가 더욱 커

미국의 외국인 범죄 정책에 관한 小考

시카고총영사관 총경 이준형



들어가는 말

국 제화·개방화 정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의 유입으로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어쩔 수 없는 외국인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최근 5년간(2011~2016) 체류외국인은 43.3% (1,395,077→2,049,441)증가했으며, 외국인 피의자 역시 62.6% 증가했다(26,915→43,764). 비록 외국인 전체 범죄율은 2.14%로 내국인(3.90%)의 1/2 수준이나, 강력범죄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점차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외국인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서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 기고는 필자가 미국에 근무시 법집행기관과 접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외국인범죄 대책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외국인범죄 정책 개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내지는 범죄자로 사회의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량 투옥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전세계 재소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¹⁾ 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사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

근해야 한다. 미국의 외국인범죄 정책은 한마디로 범죄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자의 단속 및 추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연방정부차원에서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스크린을 하고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 그에 대한 단속 및 검거가 이루어진다.

실제 미국 치안유지의 근간이 되는 지방경찰(주경찰·카운티경찰·시경찰)은 불법체류자 검거 및 단속에 연방기관과 협조적이지는 않다. 우리의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에 있어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지방경찰차원에서 외국인범죄만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그에 맞춘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절차에 의해 사법처리가 되며 단지 추방단계에 있어서 연방기관인 ICE가 전담하게 된다.

1. 외국인범죄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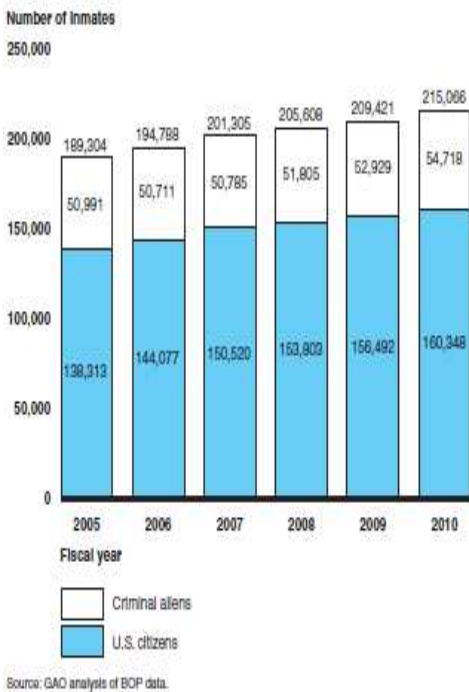
2010년 기준으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수감자는 55,000명이며 주교도소³⁾, 카운티 구치소⁴⁾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는 296,000명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감자 수는 2005년 51,000명에 비해 7%증가하였으며 주교도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는 2005년 220,000명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특히 GAO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 수감자의 27%가 외국인 수감자라고 밝혔다.

- 2)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미 연방의회 제출 보고서를 참고(2011 봄).
- 3) 보통 미국의 주교도소는 Correctional Center라고 칭하며 각주마다 20여개의 주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 4) 카운티 구치소는 County Jail이라고 하며 각주의 카운티에서 미결수들이 확정판결이전에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1) 2013년 기준 미국의 재소자수는 인구 10만명당 716명으로 세계최고이다. 미국인구는 전세계인구의 4.4%지만 재소자수는 전체 재소자수의 22%인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74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 U.S Bureau of statistics)

아래 <표-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수감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전체 수감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감자수도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9.3%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 전체 수감자에서 외국인 수감자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1: Number of Criminal Aliens and U.S. Citizens Incarcerated in Federal Prisons from Fiscal Years 2005 through 2010



국적별 현황을 보면 멕시코가 전체 외국인 수감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5%), 도미니카공화국(5%), 쿠바(3%), 자메이카(2%), 엘살바도르(2%), 온두라스(2%), 과테말라(1%) 순으로 남미국가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주교도소 및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은 2003년 222,000에서 2009년 296,000으로 주교도소는 25%, 카운티 구치소는 40% 증가하였다.

아래 <표-2>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2010년 수감자를 죄종별로 분석한 것이다. 이민관련 범죄, 마약, 교통사범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Estimated Number and Percent of Criminal Alien Arrest Offenses by Type of Offense

Arrest offense	Number	Percent
Immigration*	529,859	18
Drugs	504,043	17
Traffic violations	404,788	14
Obstruction of justice	252,899	9
Assault	213,047	7
Larceny/theft	125,322	4
Fraud, forgery, and counterfeiting	120,810	4
Burglary	115,045	4
Weapons violations	94,492	3
Motor vehicle theft	81,710	3
Sex offenses	69,929	2
Disorderly conduct	52,384	2
Stolen property	49,126	2
Property damage	42,609	1
Robbery	42,609	1
Homicide	25,064	1
Kidnapping	14,788	1
Arson	2,005	<1
Other	151,138	5
Total	2,891,668	100*

Source: GAO analysis of FBI IAFIS data.

2. 외국인범죄 대책 : ICE의 특별대책

미국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방안이다. 전자와 관련 미국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ustom Border Protection)에서 입국심사를 전담하면서 외국인 범죄가능성 혹은 불법체류가능성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스크린하고 있다. 외국인범죄자들의 추방 관련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 :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검거 및 추방 업무도 전담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외국인 체류이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수감자의 추방업무를 전담하는 ICE의 대책⁵⁾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외국인범죄 대책부서인 ICE는 '외국인범죄프로그램(Criminal Alien Program : CAP)'을 운영하고

5)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참고.

있다. ICE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법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의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CAP는 ICE에게 외국인 범죄자와 연방, 주,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신원확인, 체포, 추방을 위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CE는 수사, 체포, 추방 업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외국인범죄자가 구금에서 풀려나기 전에 최종 추방 명령 판결이 나올 수 있게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 범죄자의 구금 기간 단축과 미연방 정부의 비용 감축 효과로 나타난다. 추가로, ICE 추방집행국(Enforcement Removal Office : ERO) 담당관들이 근무 중에 외국인 범죄자를 색출 해낼 수 있게 하도록 CAP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 ICE ERO는 연방검찰청(U.S Attorneys)과 함께 미 형법 및 이민법을 근거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안전 강화와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있다.

ICE는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 IDENT/통합자동지문인식시스템(Inter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IAFI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자나 여타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해준다. 미연방당국은 외국인 범죄 식별 시스템을 통해 업무량 증가 없이도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US-VISIT, FBI, 卅사법당국, 카운티사법당국도 이 시스템을 사용중에 있다. 卅카운티 사법당국이 행하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문 채취는 통상적으로 卅형법을 위반하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지문 채취가 이루어지고 확보된 지문은 卅당국 지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후 FBI로 전달된다. 만약 이전에 이미 지문이 저장되었을 경우, '일치(match)'라는 표시가 나타나며, 수월하게 해당 범죄자의 체류상태 및 범 죄내역을 확인하여 적법한 집행을 할 수 가 있다. 반대로 지문이 새로 등록 및 저장되었을 경우에는, '일치된 지문이 없음(no match)'으로 표시된다.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해 지정된 ICE 담당관이 해당 범죄자를 심문하고 적법한 집행을 한다.

'외국인폭력범죄부서(Violent Crimianal Alien Section : VCAS)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줄이고 미이민시스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ERO와 卅카운티사법당국을 통해 확보된 상습범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연방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합동외국인범죄추방전담반(Joint Criminal Alien Removal Taskforces : JCART)'은 마약거래 및 강력범죄, 성폭행 기소 등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자의 신원 확인, 조사, 체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의 증가로 인해 인신매매, 각종 밀수, 국제적 조직 범죄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JCART는 특별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미보호관찰사무소, 미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 미국경수비대, 교정기관, 지방법집행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미연방교도소(Fedral Bureau of Prison : BOP)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범죄자는 전체 수감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ERO는 CAP를 통해 관리하는 '범죄자구금집행 및 처리원거리기술(Detention Enforcement and Processing Offenders by Remote Technology : DEPORT)' 센터를 시카고에 설립했다. ERO 담당관들은 원격 화상 회의 도구를 통해 미연방 교도국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수감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며 DEPOTR 센터와 ERO의 공동 노력을 통해 미연방구금소에서 형량을 마친 외국인 범죄자들을 ERO의 구금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신속이송승인가석방외국인범죄자추방(Rapid Removal of Eligible Parolees Accepted for Transfer : Rapid REPAT)' 프로그램은 적격한 범죄자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로 본국으로 송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석방의 허용은, 미국으로 다시는 재입국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고, 추방명령판결이 난 중범죄가 아닌 외국인 범죄자가 대상이다. 가석방이 허용된 외국인 범죄자들은 반드시 항소권리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향후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가 되어 잔여 형량을 마쳐야 하고 심지어 연방 기소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다. 卅 차원에서 구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Rapid REPAT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고 있다.

Crimmigration 문제

미국의 외국인 범죄 대책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입국금지와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라고 상술했다. 이민법 위반자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민법과 형법의 영역이 밀접하게 연관됨으로써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범죄화(crimmigration)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이 되는 조치를 하고 형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본국으로의 추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이민범죄화가 도입되면서 이민법은 형법화하고 형법적 처방이 이민법에 도입된다. 즉 이민법 위반은 범죄이며 범죄자인 외국인은 형법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민법과 형법의 통합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이민법과 형법의 주요규정들이 많이 겹치게 되었고 이민법 집행기관들이 형법 집행기관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이민법 절차에 형법 절차가 대거 준용되게 된 것이다.⁶⁾

이러한 경향은 추방대상의 확대로 먼저 나타난다. 1980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라도 추방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었으나 그 이후 형법 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강제적으로 추방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다음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물론 9.11테러로 인한 조치임은 명확하다. 외국인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추적, 감시를 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여 검거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연방기관인 ICE와 지방 경찰인 카운티 셰리프나 시경찰의 업무협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지방경찰은 불법체류자 검거 관련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은 명확하다. 이처럼 미국은 이민법에서 부족한 것은 형법에서, 형법이 다룰 수 없는 것은 이민법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외국인범죄 관련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6) Teresa Miller Citizenship & Severity: Recent Immigration Reform and New Penology, 17 GEO. IMMIGR. L.J. 611, 619(2003), 선진국의 외국인범죄 대응방안 연구(2010:54-55)에서 재인용.

맺으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이민관련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외국인범죄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2017.1.25. 트럼프 대통령은 두가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국경보안/이민집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⁷⁾이고 둘째는 미국내 공공치안 제고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⁸⁾이다. 이 행정명령들은 미국의 공공안전을 위해 이민입국 엄격한 통제 및 불법체류자 추방결정 신속 집행 등 이민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어 1.27일에는 이민반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을 통해 7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간 정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강력한 이민정책은 외국인 범죄의 단속 및 검거·추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치안유지의 근간이 되는 지방경찰은 불법체류자 검거 및 단속에 연방기관과 그다지 협조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PSI](#)

- 7) ①불법이민, 마약거래, 인신매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남쪽 국경지역에 물리적인 장벽설치②연방법/주법 위반이 의심되어 체포된 사람의 감금 시설 확대, 체포된 사람을미국 내에 잔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신속한 결정,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없어졌을 경우 즉각 추방, ③이민관련 법집행 강화를 위해 연방법/주법 집행기관간의 상호 협조 등
- 8) ①추방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포함 이민 관련 법의 충실한 집행, 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 및 재원 사용 ②연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연방예산 지원 금지 ③미국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받은 외국인들을 즉각 추방 ④추방명령 받은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2017년 상반기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미래 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치안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는 동시에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매년 상·하반기 학술세미나를 통해 경찰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더 나은 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학술세미나는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란 주제로 14만 경찰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3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7일(수) 경찰공제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는바, 그 핵심내용을 간추려 경찰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

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제1주제는 최천근 교수(한성대)가 “경찰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정부조직 개편시 경찰청의 위치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하였다. 사회는 이창원 교수(한성대)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신원부(한국평가원 원장), 최인규(경찰청 조직계장),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춘삼(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정부조직내 치안정책 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소속변경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청장은 실질적인 치안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외청장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등 주요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안 제출권 등이 부여되지 않는 등 올바른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경찰청의 위치 재설계 방안으로 (1)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청을 ‘치안부’로 격상하는 방안, (2)총리실 산하 치안처를 신설하는 방안, (3)경찰위원회 소속 경찰청 운영방안, (4)국민안전부 신설방안, (5)치안안전부 신설방안 등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의 최종결론은 경찰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한 경찰청 운영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시말해 현행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명방식과 권한을 개선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추천 3인, 국회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현재 경찰청의 보좌기관인 대변인,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정보화장비정책관 및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경찰청은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보안국 및 외사국 등 각 국의 집행업무 중심으로 사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수사 혁신방안

제2주제는 이기수 교수(경찰대)가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수사 혁신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사회는 이동희 교수(경찰대)과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원혜욱(인하대 교수), 황운하(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이광수(변호사), 윤동호(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 이기수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를 전제로 견제 받는 건강한 수사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이 교수는 수사권 부여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독립적 견제기구인 가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관한 이의신청, 경찰 수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의신청 및 기속력을 띤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부언했다. 또한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수사의 서면지휘원칙 확립, 수사주책임관 제도 도입, 지방청 중심의 광역수사체제의 확립, 사법경찰관 시험제도 신설 방안도 제안했다. 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토 가능한 방안들로 수사과정 전면 영상녹화실시,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도 경찰위원장 직급을 정무직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 후보 추천권과 감찰조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경찰의 '영장 청구 남발' 우려를 불식하고자 영장 업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 검거실적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 대신 종합적 역량 향상 정도를 평가해 수사경찰의 지나친 실적 경쟁을 막을 필요성 등도 제안했다.

과학치안 발전방향



제3주제는 배순일 차인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부장이 발표하고, 사회는 김상선(한양대) 교수와 토론자로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용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연수(동국대 교수), 최재원(다음소프트 이사), 이영수 (씨프로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배순일 부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편리해지지만 그 반면 고도화된 기술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아울러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범죄들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데, 최근 랜섬웨어 워나크라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경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하며, 이른바 스마트치안(smart polic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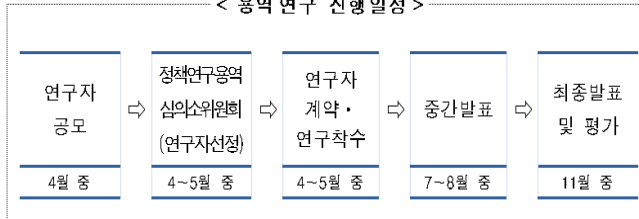
배 부장은 범죄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 Iot기반 범죄대응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범죄 대응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 시스템 등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과학치안의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역량 제고 및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즉, 첨단기술의 치안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경찰과 외부 기관, 민간 부문과 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SI](#)

연구소 주요행사

◆ 치안정책연구소 용역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치안정책연구소는 2017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용역연구과제 9건에 대해 연구자 공모를 실시했다.

< 용역 연구 진행 일정 >



◆ 치안과학기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치안과학기술연구부는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관들의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모색했다.

	발표자(소속)	주 제
4.18 (화)	조준희 대표 (이노시물레이션)	교통시물레이터 개발동향 및 치안분야 활용 방안
4.25 (화)	이동국 대표 (두타기술)	불법드론 제압 기술 개발 동향
5. 2 (화)	허귀석 전문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가스포집 및 질량분석장비 기술개발 동향
5.16 (화)	정재한 소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 시험·인증제도 및 연구개발 현황
5.23 (화)	이민경 수석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부 R&D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 및 사례
5.30 (화)	길기순 전무 (유티정보)	4차 산업혁명시대의 IoT기술을 활용한 치안서비스 제공

◆ 치안정책연구부 ‘조사방법론’ 특강 개최

치안정책연구부는 2017년 4월 27일(목)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를 초빙하여, 각종 연구 및 현황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기법의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17년 상반기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017년 5월 17일 경찰공제회관에서 “미래 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는바, 사회·발표·토론자

를 포함 약 12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 「치안정책연구」 제31권 발간

학술등재지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1호는 3차에 걸친 편집위원회(위원장 용인대 이상원 교수) 회의록을 통해 10편의 최종 게재논문을 확정하였다.

연번	논문 제목
1	과학기술이 경찰활동에 미친 변화와 그 시사점
2	경찰혁신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5	경찰의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로의 영향요인
6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제20대 국회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7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8	신경망을 이용한 UTIS 시설물 장애검지 알고리즘 개발
9	교통경찰 서비스 만족요인 우선순위 결정연구
10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인증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신임연구관 소개

◆ 과학기술부 연구인력 임용식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6월 2일 연구소 직제개편과 R&D분야 연구수행 및 관련 인력증원에 따라 신규로 우수 전문인력(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임용하였다.

분야	성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비고
분석화학	이부영	뉴욕시립대학교 지구·대기과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데이터 분석	정인규	국민대학교 응용정보기술학 (석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인공지능·영상분석	이용걸	단국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박사수료)	단국대학교 외래강사	
장비	방금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후(석사)	한국전력공사 (㈜삼성에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 시스템	윤철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석사)	수원서부서 정보통신계 경찰대학 정보통신운영계	